

건축사법 개정시안 유감

Regrettableness of the Architects Law Revised Bill plan

申文燮/대명건축사사무소

by Shin, Moon-Sub

신한국 창조와 자율과 개방의 시대에 우리에게 밀려든 건축사법 개정시안은 참으로 당혹스러운 것이었다. 시안작성자들은 아직도 권위주의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몇몇 대형사무소의 건축사들은 자기 몫 챙기기에 급급한 것 같다. 금번 제시된 시안에서도

건축사들의 업무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건축행정의 잡음과 마찰이 일소 될 수 있는 개선책 제시는 미흡한 것 같다. 제시된 개정시안을 읽고 느낀 몇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나의 줄건이나마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신한국 창조와 자율과 개방의 시대에 우리에게 밀려든 건축사법 개정시안은 참으로 당혹스러운 것이었다. 시안작성자들은 아직도 권위주의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몇몇 대형사무소의 건축사들은 자기 몫 챙기기에 급급한 것 같다. 금번 제시된 시안에서도 건축사들의 업무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건축행정의 잡음과 마찰이 일소 될 수 있는 개선책 제시는 미흡한 것 같다. 제시된 개정시안을 읽고 느낀 몇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나의 줄건이나마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건축사법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숙원중의 하나가 사무소 형태를 규정한 건축사법 제5장 제23조(등록)의 개정이다.

지금까지 대다수 건축사들이 요구했던 법개정의 방향은 단독과 종합사무소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사무소 형태를 단일구조로 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시안 제5장 제23조(건축사사무소 등록) 및 제23조 3(설계, 감리법인)에서는 건축사사무소와 설계, 감리법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요구했던 사무소 형태는 아니다. 동일한 면허를 가지고 사무소 형태만의 차이로 업무의 차이를 두고 규제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평등권에 위배될 것 같아 생각되기 때문이다. 시안의 제23조와 제 23조 3에 사무소등록 및 인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사법이라는 한 법의 테두리 속에서 한 사무소는 시,도지사에 등록하고 또 다른 형태의 사무소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는다라는 것은 사무소의 차등을 의미한 것이며, 이를 음미해보면 시, 도지사에게 등록된 사무소 영업의 구역과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무소의 영업구역이 구별 되도록 유도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되는데 나만의 기우일까?

또 설계, 감리 법인 사무소에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은 전국적 지사망을 통하여 대형 법인 사무소가 전국의 일(작품)을 독식하겠다는 저의가 내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법인 대표자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아 건축 설계, 감리 법인의 대표자가 건축사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은 돈많은 재벌에 종속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건축 설계, 감리 행위는 영리만을 추구하는 행위는 아니다. 학교에서 건축을 배울 때 들은 “건축은 종합예술이며, 창작 행위이다”라는 말을 새삼 떠올리지 않더라도 창조적 창작 활동을 자유로이 행하여야 할 건축사가 비건축인에게 고용되어 간섭을 받는다면 좋은 건축작품이 탄생할 수 있겠으며 건축발전은 있겠는지?

아름답고 훌륭한 건축물의 탄생은 설계하는 건축가의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들이 어느 사무소의 작품이라고 하기보다는 건축가 누구의 작품이라고 건축사에는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예에서도 한국건축사에 기록될만한 건축물의 설계도 초기에는 ○○건축사 사무소의 건축가 누가 설계하였다고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 역사성을 띄게 되면서는 건축가 ○○○의

작품이라고 회자되게 되는 것이다. 당국에서는 U.R에 의한 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형 사무소의 탄생을 유도하는 것 같으나 대형 사무소가 당국에서 유도 한다고 해서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대형 사무소가 있게 하는 것은 법의 규정이 아니고 일(작품)거리인 것이다. 일이 많고 크면 이를 소화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이고 사무소는 자연히 대형화 되는 것이 자유경제에서 자연적인 현상일 것이며 억지로 의형상 대형 사무소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일이 없으면 그 사무소는 부실화되고 영세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행법 개정 당시 단독 사무소와 종합사무소의 이중구조 형태를 도입할 때도 당국에서는 사무소 대형화의 필요성을 내세웠으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종합사무소의 형태가 일부를 제외하고는 법 취지대로 대형화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현 건축사법 제23조는 사무소의 형태구분을 없애고 단일사무소 형태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법인 사무소는 현행과 같이 필요에 따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이 어떨는지?

건축사 자격시험은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를 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있는가 하는 평가의 시험이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고 그 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자격 취득당시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그 이후 건축 행위에 따른 중대 과실이 없는 한 그 자격을 취소하는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한 사람이 자격취득한 후 갑자기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갑자기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자격시험에 교양과 인격까지를 합격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지 않은가? 시안 제11조(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서는 여러가지 자격 취소 의무 조항을 두고 있다. 제1항의 경우야 당연한 일이나 제2항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형벌에 대하여는 해당 형벌판결당시 해당법에 의하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여부가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내려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지? 기타의 조항들은 의무조항 보다는 임의조항으로 하여 융통성을 확보하면서 자격의 취소가 아닌 등록의 정지 또는 취소로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술자 관리를 위한 국가기술 자격법에서도 부정확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만의 자격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기타는 임의조항으로 융통성을 주고 있으며, 건설기술 관리법 건설업법 등 영업행위와 관련된 법령에서는 영업 주체인 법인의 면허 취소나 정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종사하는 기술자에게는 가벼운 처벌 규정만을 두고 있다. 그런데 건축사를 육성하고 보호해야 할 건축사법에서 자격 취소요건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는 타인의 재산을 나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 할 것이다. 서양인의 사고방식과는 달리 우리나라나 동양 유교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는 토지와 건물이 생산을 위한 재화가 되지 못하고 재산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이 더 커지는지 모르겠다. 그런 건축물이 건축되는 건축행위는 건축사 혼자만의 행위가 아니다. 자본가인 건축주, 설계와 감리를 담당하는 건축사, 공사를 현장에서 집행하는 시공자 등 삼인의 공동 노력으로 한 건축물이 탄생된다. 개정시안 제 19조2항(손해배상책임)은 건축사는 설계, 감리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 타법령(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에서는 행위자의 잘못에 대한 명문의 배상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건축물이 건축되는데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를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여 완성시키는 것은 시공자이다. 감리자는 행위자인 시공자가 설계도대로 시공되도록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다. 설계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가 잘잘못의 판단이 가능할 수 있으나 감리에 대한 잘잘못은 그 한계 설정이 참으로 애매하다. 시공자가 부실시공을 하였다면 아무런 문제 발생의 여지가 없을 사항들이 시공자의 불성실한 시공으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그

책임까지도 설계, 감리자가 져야 하는 것인지? 또다른 분규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데는 법적인 제약이 없다. 즉 건축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없는 사람도 시공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런 시공자가 시공하는 건축물을 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단편적으로 부분적인 시공상태 등을 감리하고 총체적인 책임을 지라는 것은 무리한 주문이 아닐는지?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기술자 면허 소지자로 하여금 현장에 상주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면허 소지자가 현장에 상주도록 한 것은 기술을 집약하여 좋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함에서 일 것이며, 이 과정에서 설계도서의 오인도 미리 점검하여 건물의 근본적인 부실화를 방지하자는 뜻도 내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건설업법에 시공자의 잘못에 대한 배상 규정이 없는 데도 분규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처리되고 있으며, 설계의 잘못이나 감리의 잘못으로 인한 건축물의 손해에 대하여도 민법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건축사법에서 보상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은 건축주와 건축사간, 시공자와 건축사간의 불신만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 생각된다.

설계도서의 작성은 건축사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기 때문에 건축사법 제 2조3항에서도 권한뿐 아니라 책임까지를 강조하고 있고 모든 건축사들은 자기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하여 자기가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시안 제 22조(설계도서의 신고) 제2항에서는 건축사 협회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 목적 또는 특수 지역의 설계에 대하여 그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부분적으로 심사할 수는 있으나,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전반에 걸쳐 심사를 하여야 하도록 한 것은 건축사를 불신하는 조항이며, 사법 제2조3항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조항이라 생각된다. 현재의 행정절차에서는 허가권자가 허가하는 과정에서 도서 검토는 불가피하게 행하게 되므로 이중의 검사를 받게 된다. 이는 시간과 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며 신속한 민원처리를 지향하는 현대 행정에도 역행하는 것이며 자칫 옥상옥의 모순을 초래할 수도 있지않을까 생각된다.

건축사협회의 조직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사법 제34조(임원)의 규정은 80년대 초반부터 개정됨이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간 4개의 직할시가 생기는 등

행정구역이 15개 시, 도로 변경되고 회원의 수도 80년 1,888명에서 93년 4,065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사회는 이사 5~9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이 일일생활권이라고는 하나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정서를 가질 수도 있고 각 지역의 대표들이 골고루 참여하지 못하여 각 지역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이사회 의결에 대한 회원들의 동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된다. 현재 협회 이사회 운영에서도 법이나 정관에도 없는 참여 이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이사회에 대한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있다. 금번 사법개정시 이사의 숫자를 늘려 각 시·도가 지역의 대표성을 지닌 이사를 골고루 참여시키고 명실상부한 회원의 대의 기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한다.

부회장 제도의 개선이다. 건축사 협회가 건축사들의 직능 단체인 관계로 행정력이 미흡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력이 뛰어난 부회장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총회에서 선출하는 비 상근 건축사 부회장이 필요하다. 회장 유고시에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 건축사 직능단체의 장을 비건축사가 수행하는 기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재를 양성하고 능력의 검증을 위해서도 건축사 부회장 제도는 필요한 것이다. 회장, 부회장의 취임을 건설부장관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 개정시안을 바꾸었으면 한다. 회장의 취임 승인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앞의 문제 말고도 많은 조항에서도 다소의 문제들이 발견된다. 시안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에서 건축주 또는 시공자가 주의에 따르지 않을 때 허가권자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즉시"라는 시간이 얼마인지? 공사시정이 그렇게 즉시즉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인지? 서면으로 공사중지 또는 재시공을 요구하고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면 아니되는지? 또 제25조(무등록 업무의 금지)에 단서는 왜 두었는지 사무소 등록(개업)을 하지 않고도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제14조(응시자격)단서를 그대로 존속시켜 기회 균등의 원칙을 무시하고 공무원들에게 계속 특혜를 부여할 것인지? 기타 별칙 조항 등 많은 손질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무리일까?

끝으로 제1조의 건축사법이 건축물의 질적 향상만을 목적으로 한 법이라는 것을 되새겨 보니 뒷맛이 씁쓸함은 나만의 생각일까?